

풍력발전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권 용 규

경북 영덕군 재무과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이며,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충이 선결 요건이다.

민선자치 이후 그 동안 지방재정 부문에서 구조와 운영방식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총량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자체수입의 심각한 부족상태, 이전재원에 대한 기대과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의 기초는 재정문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분권』이란 궁극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아닌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보를 통하여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외에 과세대상으로는 감가상각자산중 시설물과 부수시설물, 선박 등 일부에 국한하여 지방세법상 열거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풍력발전기와 유사한 송전철탑에 대한 과세도 2002년1월1일부터 철탑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현재로서는 과세방안을 모색하기란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연구에 부족함이 많으므로 풍력발전기를 기준으로 과세방안을 연구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물건과 풍력발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형평성을 비교·검토하여 과세방안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풍력발전기의 종류 및 유형, 과세대상과 비교, 과세의 필요성, 기대효과 순으로 살펴본다.

3. 지방세법상 법령 검토

현행 취득세는 1909년4월1일 최초로 신설되어 1927년도 부동산취득세로 개칭 되었다가 1952년부터 취득세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세는 부동산을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등록세와 더불어 지방세목중 세수 비중이 높은 세목에 속한다.

부동산 외에 과세대상으로는 감가상각 자산 중 시설물과 부수시설, 선박 등 일부에 국한되며, 앞의 것들은 지방세법상 열거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최근 20년간 과세대상에 추가된 과세물건을 살펴보면 1985년1월1일부서는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1991년1월1일부터 골프회원권과 콘도미니움 회원권을, 1995년1월1일부터 종합시설이용 회원권을 추가하였으며 2002년부터 풍력발전기와 유사한 송전철탑과 방송 송·수신탑, 무선기지국용철탑 등도 과세대상에 추가 되었다.

먼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이란 2000년도까지는 『토지, 건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열거한 구축물과 특수부대설비는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되었으나, 2001년 『토지, 건축물』로 규정 되었고 지방세법상 제104조제5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시설로 규정함으로써 특수부대설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과세객체가 되는 과세물건이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로 보게 되며, 『특수한 부대설비』라는 용어는 2001년1월1일부터 삭제되고 『건축물의 부수시설』이라 하며, 『구축물』은 『시설물』이라고 하였지만 열거된 내용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중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2제2호의 건축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시설물은 결국 건축물과 구별되는 과세대상 물건이라고 하겠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열거한 내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이와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2002년)
7. 기타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 기지국용 철탑
8. 레저시설 중 골프연습장 20타석 이상(2005년)

위와 같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그 일부만을 지방세법에 열거하여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 과세대상 물건으로 포함된 열수송관, 송전철탑 및 방송중계탑 등과 같이 과세물건을 새로이 발굴하여 지방세법에 열거함으로써 과세대상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부속시설물이라 함은 과세대상 건축물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거나 종물 등으로 당해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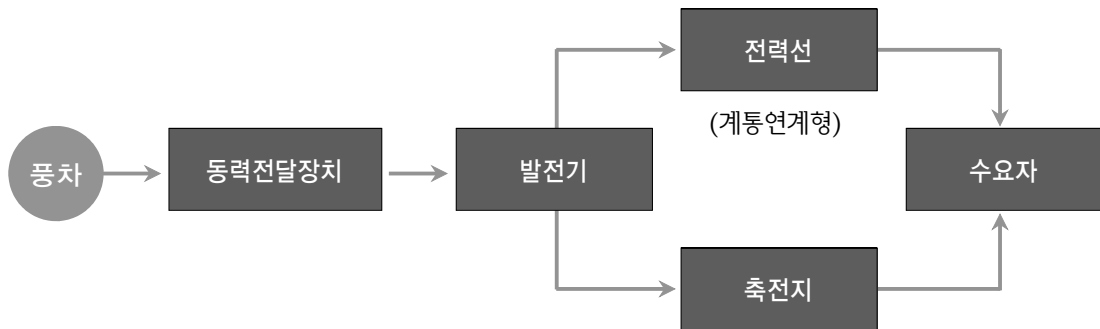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의 과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II. 풍력발전기의 현황 및 보급전망

1. 풍력발전기의 정의

가. 원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이다.



나. 특징 및 시스템 구성

풍력발전이란 공기의 유동이 갖는 운동에너지를 회전자의 공기 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을 회전시켜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를 다시 발전기를 회전시켜 발전하는 방식이다.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의 기술상 분류는 크게 시스템 구조에 따라 수직축과 수평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구조나 용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날개(blade)와 허브(hub)로 구성된 회전자와 회전자의 회전을 증속하여 발전

기를 구동시키는 증속장치(gear box), 발전기 및 각종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제어장치, 유압 브레이크 장치와 전력 제어장치 및 첩탑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회전축방향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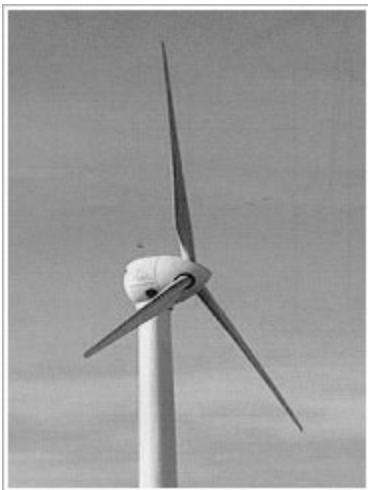


[수직축발전기]



[수평축발전기]

2) 운전방식에 따른 분류



[GEARLESS형]



[GEARED형]

2. 풍력발전기의 현황

가. 영덕군의 현황

총 39.6MW 규모로 1.65MW급 풍력발전기 24기가 건설되어 있으며, 이는 연간 약 9만6천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매출액 기준 연간 약 105억원의 효과를 얻게 한다. 이는 일반 가정의 20,000가구가 이용할수 있는 전력량이다. 게다가 영덕풍력 발전단지는 현재까지 설치된 풍력 발전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설치 기종도 국내도입 기종 중 최대용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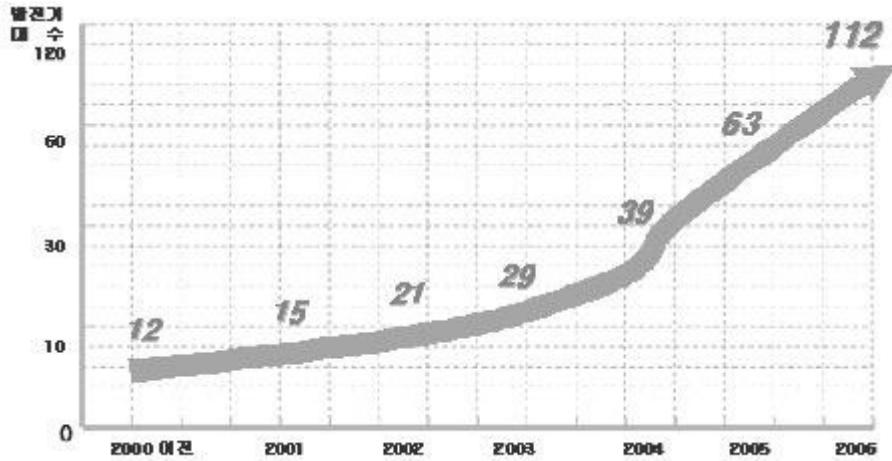
-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5월 ~ 2005년 4월
- 2) 총사업비 : 675억원
- 3) 주요시설 : 풍력발전기24기, 변전소1동, 송전선로, 홍보관 등
- 4) 영덕군 사용가능 가구 : 19,800가구
- 5) 시공업체 : 유니슨산업주식회사
- 6) 발전기 : 덴마크 NEG마이콘사
- 7) 사용형식 : 기어형 수평축 발전기
- 8)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효과
 - ① 균유임야 대부분로 군 세외수입 증가
 - ② 이색적인 관광지로 부각되어 초등·중학생 현장학습으로 인기
 - ③ 지역인 고용증대로 일자리 제공

나. 풍력발전시설 보급현황

1) 지역별 상업발전용 현황(2006년)

지 역	기당발전용량(연,MW)	설치대수	생산량(MWh)
강원도	102	60	143,379
제주도	16	20	32,731
전 북	9	6	4,582
경 북	41	26	96,567

2) 연도별 상업발전용 증가 추이(누계)



※ 대규모용량(100kW 이상)

설치년도	시설용량(kW×기)	설치자	제작사	설치장소	비고
1994	170×1	한국화이바	미국Flowind	전남 무안군	
1995	100×1	에기연	덴마크VESTAS	북제주군 한림읍	
1997	550×1	한국화이바	미국존드사	전남 무안군	
1998	600×2	(주)효성	덴마크VESTAS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1999	600×1	(주)효성	덴마크VESTAS	경북 울릉도	중지
1999	660×2	(주)효성	덴마크VESTAS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1999	225×1	(주)효성	덴마크VESTAS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1999	750×1	한국화이바	네덜란드	전남 무안군	
2000	750×2	(주)STX	덴마크NEG-M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2001	660×1	(주)효성	덴마크VESTAS	경북 포항 대보면	중지
2001	660×2	(주)효성	덴마크VESTAS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2002	750×1	강원대학	프랑스	강원도 대관령	
2002	750×3	(주)STX	덴마크NEG-M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2002	750×2	(주)STX	덴마크NEG-M	전북 새만금	
2003	660×3	(주)효성	덴마크VESTAS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2003	750×2	(주)STX	덴마크NEG-M	전북 새만금	
2003	660×3	(주)효성	덴마크VESTAS	강원도 대관령	
2004	1,500×4	(주)STX	덴마크NEG-M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	
2004	225×1	오로라에너지	오로라에너지	경북 포항시	

2004	850×2	(주)효성	덴마크VESTAS	강원도 태백시	
2004	750×2	(주)STX	덴마크NEG-M	전북 새만금	
2004	660×1	(주)효성	덴마크VESTAS	강원도 대관령	
2005	1,650×24	유니슨(주)	덴마크NEG-M	경북 영덕군 창포	
2006	2,000×49	유니슨(주)	덴마크NEG-M	강원도 대관령	예정

3. 풍력발전기 보급 가속화 배경 및 전망

가. 풍력발전기 보급 가속화 배경

원가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 : 무한정, 무비용의 청정 에너지원 ○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의 가격경쟁력 향상 ○ 발전시스템 설치의 소요 면적 최소화 ○ 시스템의 대용량화 구현
사회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환경보호, 지구온난화방지, 온실가스감축의무 ○ 에너지 장기 수급의 안정성 ○ 도시, 산간, 오지의 전력공급 가능 ○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대체에너지원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관광산업 활성화 ○ 공급의 안정성 -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 시스템의 대용량화/기술개발로 인한 대형시장 잠재력

나. 풍력시장 현황

국내 풍력 시장	입지 조건	장 점	○ 풍력에너지 풍부(제주도, 서해안, 동해안, 대관령지역)
		단 점	○ 풍속의 변화 잦음 → 고장으로 효율성 및 경제성 저하
		개선안	○ 풍향 조건 적응성이 뛰어난 고효율 시스템 개발
세계 풍력 시장	정부차원지원책	기술개발현황	○ 2002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 ○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량의 7%수준인 2,250MW급 보급 예정
		기술개발현황	○ 750kW / 1MW급 풍력발전시스템 국산화 개발 중
세계 풍력 시장	정부차원지원책	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규제협약 ○ 교토의정서 : 세계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설정
		기술개발현황	○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보급촉진 정책 활성화 ○ 2020년 전세계 총전력수요의 12% 풍력으로 대체 목표(원자력 수준에 도달 목표)
		기술개발현황	○ 3MW급 상용화 단계 / 4MW급 실증시험 중

다. 우리나라 풍력발전기 보급 전망

1단계(~2005년)	2단계(2006년 ~ 2008년)	3단계(2009년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급 750kW 풍력발전기 상용화 ○ 풍력자원 DB구축 및 예측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급 1,500kW 풍력발전기 상용화 ○ 해양풍력발전기 개발 및 상용화 ○ 해양풍력 자원 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형급 3MW 풍력발전기 개발 및 상용화 ○ 해양풍력단지 보급확산 ○ 풍력발전 산업 고도화로 해외수출 확대

정부는 총 전력생산량 기준 2006년까지 2.4%, 2012년까지 7%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할 목표로 있으며, 2012년 기준 총량 2,250MW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21%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¹⁾ 영덕군에 설치된 시설용량(1,650kw)을 기준으로 할때 2012년에 1,500기의 풍력발전기가 전국에 설치·보급될 전망이다

III. 과세의 필요성

1. 세원 분포의 보편성 증대

풍력발전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환경개선 및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풍력발전기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영덕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은 93,600ton(대체연화)의 절감효과 및 연간 24,000ton(석유환산)의 신·재생에너지 대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전력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정책과 세계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이 발생되므로 향후 상업용 풍력발전기의 설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풍력시장 현황을 보면 풍력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얻고 있으며, 가장 많은 풍력발전기를 가진 독일은

1)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16,543기의 풍력발전기로 독일 전력 소비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70년대 두 번의 석유과동을 겪고난 후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9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의 증설을 중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더욱 활성화 되었다.

2.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실적

가. 발전차액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²⁾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³⁾ 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나. 발전차액 지원금액

(거래량 : MWh, 금액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월
풍 력	거 래 량	1,326	18,561	29,147	103,361	29,862
	지원금액	186	254	790	3,911	691

구 분	발전차액대상					
	계		가동중		허가획득	
	용량(kW)	건 수	용량(kW)	건 수	용량(kW)	건 수
풍 력	181,235	8	83,395	4	111,500	4

2)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에너지)로서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등 11개 분야를 말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기준가격 : 1 kWh 107.66원

전력판매의 경우 SMP판매방식은 판매단가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월평균 81.90원/kwh에 판매되고 있으며 그 외 풍력단지의 경우 지역에너지 사업이나 한전과의 장기구매계약(PPA)에 의해 67.07원/kwh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기준가격인 107.66원/kwh의 차액인 25.76원/kwh ~ 40.59원/kwh을 지원받고 있다.

3. 과세의 타당성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각종연구개발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기계 및 장비가 속속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만들어진 장비에 대하여 과세범주에 새로이 추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의 규정중 에너지공급시설인 송전철탑이 유사시설물인 만큼 과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과세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상업용 풍력발전기를 과세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이고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IV.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가.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구분

시설물에 대한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계장치와의 구분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며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그에 대한 구분이 관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판례에서는 기계장치를 『동력⁴⁾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으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어 그와 유기적인 관련을

4) 전력,수력,풍력 따위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힘

가지는 시설물의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일부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시설물의 범위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수한 시설물 중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열거된 시설물만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기계장치	시설물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의미함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열거된 시설물에 한정됨

나. 기업적 측면

향후 기업의 수익성 차원에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시 세수증대 효과는 클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의 측면에서는 설치비용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 해결방안

가. 에너지공급시설로 규정

시설물의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토지에 정착할 것,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될 것, 열거된 시설물에 한정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는 첫째, 시설물이 원칙적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나 유원지 옥외오락시설의 경우에는 건물내에 있거나 건물외부에 있더라도 위치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시설물은 그 본체와 부수시설로 구분되는 것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부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부수시설이 기계장치인 경우에는 저장시설이 기계장치의 일부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수가 있으나 다른 기계장치와 일련의 시스템으로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도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셋째, 옥외오락시설의 경우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유원지내의 옥외오락시설을 레저시설로 규정하여 과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킹이라는 옥외오락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오는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일종이지만 유원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넷째, 송전철탑도 에너지공급시설로 규정하여 과세대상 범위는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선을 지탱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형태·명칭여부에 불구하고 20만볼트 이상의 전압을 송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현재 2회선·4회선식과 345kV와 765kV로 과세된다. 따라서,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한 풍력발전기를 에너지공급시설로 규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조세형평성

기업의 경우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과 세계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이 발생되며,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어도 조세특례법 제121조2제4항에 의거 (영덕 34%) 5년간 감면하므로 기업의 수익성 차원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 조세마찰 우려에 대하여 입법단계부터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유사시설물인 송전철탑이 현재 과세되고 있는 점을 부각하여 과세의 필요성과 다른 과세물건과의 조세형평성에 관하여 홍보의 초점을 맞춘다면 납세자가 수용 가능하리라 예측된다.

V. 풍력발전기에 대한 과세방안

1. 과세대상 추가에 따른 법령 개정

풍력발전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2(건축물의 범위)제6호 (6.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에 풍력발전기(상업용 이외의 것은 제외한다)로 개정하고 용어 정의에 “풍력발전시설이라 함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를 추가한다.

2. 과세표준액 결정방법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는 풍력발전기의 종류 및 형식별로 신조가격을 조사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여 고시하고, 해당기기의 취득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세원이 가능한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지방세로 적합하지만,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보유한 시도에서는 과세할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만 유일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원이 매우 보편적이지 못한 세목이다. 실제로 세원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할때 지하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원은 모두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세원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현행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립과 자주재정 확충의 일환이며 지역의 균형 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06년부터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런 지역개발세가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 걸맞은 세목을 정해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발전에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정도 세원의 보편성과 확장성을 가진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처럼 0.5원/KWh의 지역개발세를 과세되어야 한다.

VI. 기대효과

1. 지방세수 증대

현재 상업용 풍력발전기는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설비 가격도 고가이다.

〈영덕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현황〉

구 분	모델명	허브 높이	회전자 직경	제작사	연간전력 생산량
수평축기어형	NW82	80m	82m	덴마크 NEG-M	9만6천MWh

경북 영덕군의 경우 24기가 설치되어 상업화가 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49기가 설치에 정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2012년에 1,500기의 풍력발전기가 전국에 보급된다면, “풍력발전기”를 에너지 공급시설로 추가하여 과세대상물건으로 규정시, 풍력발전기 1기당 취득가액 20억원으로 취득세 600억원, 재산세 90억원의 세수증대가 발생되며, 지역개발세의 경우 1킬로와트시당 0.5원 과세시 연간 30억원을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세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의 본질 회복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 필요성에 의해 지방세목을 발굴·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치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주재정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I. 결론

지방세 체계상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세원은 거의가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은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세원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세원은 어느 정도의 지역적 편중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에너지 장기정책에서 총 전력생산량 기준 2006년까지 2.4%, 2012년까지 7%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할 것과 2012년 기준 총량 2,250MW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21%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풍력발전기 보급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대상물건과 비교·분석 해 본 결과 과세대상 범위에 포함하여도 아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 형평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새로운 세원을 업계의 반발과 조세마찰을 우려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세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추가 시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인 풍력발전기는 과세물건으로 꼭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